

##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상 반론보도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이 수 종\*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법학박사

### 국문 초록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유튜브 채널 등 새로운 멀티미디어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는 중요한 언론법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에서도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출현한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피해구제는 아직 관련법의 미비에 따라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평적 규제모델의 채택 하에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를 유사기능 중심으로 정비해 왔다. 더욱이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써 저널리즘적 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 Telemedien)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게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현행 미디어 법체계나 이를 둘러싼 개선논의들은 여전히 매체중심의 규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융합현상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국내의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확대 논의에 있어서 이제는 매체중심적 규정방식을 탈피해 포괄적·개방적 멀티미디어 개념의 정립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왜냐하

\* sjlee@pac.or.kr

면 오늘날의 온라인 언론 제공물의 특징은 그 구성방식이나 제공형태에 있어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체에서 벗어나 텍스트, 영상, 동영상 혹은 이들의 혼합 형태를 지닌 미디어 융합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체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은 더 이상 기존의 매체형태를 고수하기 보다는 제공 콘텐츠가 저널리즘 활동을 통해 헌법상의 여론형성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독일 텔레미디어 개념의 참조 하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저널리즘적 멀티미디어 제공물에 상응하는 독자개념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다.

주제어: 멀티미디어,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독일 미디어국가협약, 반론보도청구권, 간기의무

## 목 차

- I. 문제제기
- II.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수성 문제
  - 1. 독일 텔레미디어 관련 입법규제의 헌법적 의미
  - 2. 독일 반론보도 청구제도 개관
  - 3.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상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수성
- III.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상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 1.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 개요
  - 2.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의 실질적 요건
  - 3. 형식적 요건
  - 4. 반론보도게재의 이행요건
  - 5. 법원예의 권리주장(제20조 제3항)
- IV. 미디어국가협약 제18조상의 간기외무
  - 1. 개관
  - 2.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 3.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 4. 책임자의 지명
- V. 결론 및 제언

## I. 문제제기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중재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침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이나 언론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실현수단에 속한다. 하지만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통한 매체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여론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들이 언론중재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구제에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은 조직과 절차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 유튜브 채널이나 SNS 등의 공론장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저널리즘적 활동이 매우 활발한 현실을 고려할 때,<sup>1)</sup> 피해자

입장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수단의 미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라는 민주주의 관점에서나 국민들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중재제도를 둘러싼 근래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새로운 미디어융합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언론중재제도의 대상 범위를 유튜브 채널이나 SNS상의 콘텐츠 등 새로운 멀티미디어에 대해서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뜨겁다.

대표적으로 언론사가 운영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팟캐스트, 뉴스큐레이션 서비스, 뉴스펀딩, MCN 등 신생 뉴스플랫폼이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언론중재제도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적 주장<sup>2)</sup>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미디어법은 뉴스 개념의 본질적 속성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개념 틀을 디지털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이외에 신생 인터넷 개인방송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하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sup>3)</sup>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sup>4)</sup>

1) 비근한 예로 전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 씨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 씨 담당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하였다. 연합뉴스 2024년 4월 17일자 “‘조국 명예훼손’ 보수유튜버 1천만원 배상 확정” 제하의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7084400004>.

2) 류정호 (2015). 디지털 뉴스미디어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 <미디어와 인격권>, 창간호, 55-56.

3) 오기두 (2016). 인터넷개인방송에 의한 표현의 보호와 규제,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 제1호, 197.

4) 블로그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언론 기사의 복사나 링크 등으로 정보의 빠른 확산에 기여하지만, 현재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피해의 구제방안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으로는 손형섭 (2021).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184; 이밖에도 주로 최근 인터넷 환경의 급변현상을 언급하면서 현행 언론중재법이 전통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체계와 구제수단으로는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연구로는 빠르게 바뀌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는 언론 개념과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양상이 변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와 관련된 언론 개념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언론과 관련된 법들이 규제와 관련하여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통적 언론 개념에서 논의되어왔던 언론의 자유는 뉴미디어 시대에 수정과 재해석이 필요하며,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언론의 자유 및 이와 충돌하는 다른 인격권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sup>5)</sup>

이러한 와중에 언론중재제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의 적응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다. 우선 반론보도 청구제도는 피해자에게 무기평등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반박기회를 통해서 공정한 여론형성의 공론장을 개방해 놓음으로써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진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경로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권 보장에 기여하는 제도보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sup>6)</sup>

그러한 점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형태에 대해서 과연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의

---

급증하는 권리침해적 보도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하는 논문으로는 김주연 (2020).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언론중재제도 관련 입법과제 검토, <언론중재>, 통권 제155호, 51; 언론중재제도의 개정과정에서는 특히 '언론'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동법에서의 쓰임새,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는 작동방식을 다각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논문으로는 이승선 (202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60.

5) 박아란 (2015). 뉴미디어 시대 언론 개념의 특성 및 한계,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51.

6) 조소영 (2006). 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공법학 연구>, 제7권 제4호, 162.

문제는 우리의 반론보도 청구제도가 마주한 현실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송과 콘텐츠에 따라 유사서비스기능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규제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국내의 반론보도청구권을 관장하고 있는 근거법률로서 현행 언론중재법은 여전히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등 수직적 매체규제모델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론보도 가능성은 법률의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역시 지난 2022년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대상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상의 한계로 인해 실무상 적용범위를 유튜브 콘텐츠 제공자(채널·계정 운영자)가 언론사인지, 콘텐츠 내용이 보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 삼아 조정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sup>7)</sup>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미디어법제를 개선하고 멀티미디어에서의 뉴스나 저널리즘적 성격의 콘텐츠 역시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경우 실질적, 구체적 절차보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실무상의 구체적 방식과 절차에 대한 접근법이 함께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안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국내의 논의들 가운데 이러한 연구들이나 비교법적 차원의 고찰 역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의 반론보도 청구제도가 독일식 모델을 선택하여<sup>8)</sup> 1981년 도입된 이래 수많은 적용과 변천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유독 멀티미디어에 대한 제도개선 부분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관련 법제현황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7) 미디어오늘 2022년 9월 6일자 기사 “앞으로 ‘언론사 유튜브’는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 가세연은 ‘유보’”,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715>.

8) 박용상 (1991).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통권 제38호, 21.

생각된다. 나아가 멀티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절차 관련 규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작업 역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실무기준 개선에 많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평적 규제모델의 채택 하에 연이은 법률개정 과정을 통해 멀티미디어 시대의 매체융합 현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각종 미디어 관련 법제를 정비해 왔다.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신의 적용영역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Telemedien mit 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n Angeboten)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게재의무를 포함한 다양한 저널리즘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규정은 새로이 신설된 규정이라기보다는 2007년 3월 1일 동시에 발효된 제9차 개정방송국가협약(RÄndStV)에 따른 기존의 방송국가협약(RStV) 제6장을 계수한 것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의 저널리즘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나 반론보도 제도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관련 실무 역시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관련 법 내용이나 논의가 국내에 전혀 소개된 바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법적 논의차원에서 독일의 미디어국가협약(MStV) 가운데 반론보도 청구제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국내의 반론보도 청구제도 마련을 위해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II. 독일의 텔레미디어, 즉 멀티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수성 문제, III.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상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요건, IV.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상의 간기의무에 관한 규정들 및 관련 논의들을 차례로 살펴본 뒤 V.에서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현황을 진단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법 개정작업 및 실무기준 도입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II.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수성 문제

### 1. 독일 텔레미디어 관련 입법규제의 헌법적 의미

본 논문이 시도하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확대 논의는 우선 헌법적 관점에서 왜 멀티미디어에 대해서도 반론보도 청구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위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1992년 바이엘 결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설파한 바 있다.<sup>9)</sup> 여기에서 재판부는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은 개별적인 의견표현을 넘어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총체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의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이 헌법상 의견표현권과 구별되어야 하는 각별한 지위를 강조하였다. 기본적으로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전통적인 개인의 의견표현(의견표현권)과 제도적인 의견전파 혹은 의견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데, 의견표현권에 비해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은 민주적 의사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적 기본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이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가지는 공적 책무가 언급되기도 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출판 등 매체에는 제도적 진흥과 같은 특권이 부여되기도 하는 반면에 저널리즘적 원칙의 준수 의무 차원에서 주의 깊은 진실조사 의무나 특별한 간기의무, 광고제한 등의 책임이 수반되기도 한다.<sup>10)</sup>

<sup>9)</sup> NJW 1992, 1439, BVerfG, Beschluss vom 09-10-1991 - 1 BvR 1555/88.

<sup>10)</sup>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 Berichterstattung, 6. Aufl., § 1, Rz. 32.

다만, 독일 기본법에는 신문, 방송, 영화 등의 매체 이외에 멀티미디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본법의 침묵이 멀티미디어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공백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독일 기본법 제5조 제2항이 신문, 방송, 영화라는 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한 현행 보장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에는 해당 규정을 신문과 방송이 아닌 미디어자유권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저널리즘 활동 역시 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러한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이제 미디어융합이라는 매체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문, 방송, 영화의 자유권은 통일적인 미디어자유권으로 보는 헌법적 해석이 요구된다고 강조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관점에서 무엇보다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매체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저널리즘은 이미 해당 콘텐츠의 광범위한 확산효과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신문매체나 심지어 방송매체에 버금하는 영향력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매체규제법이나 각종 미디어 법제에서 등한시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인 미디어 등 개인이 행하는 지속적인 저널리즘 활동을 전문적인 저널리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이 신문 등 전통매체에 부여한 저널리즘 원칙의 준수나 진실한 조사 의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논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출판 등 미디어계에 주어진 주의의무 등의 원칙들을 일관되게 요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2)</sup>

이러한 차원에서 독일의 멀티미디어 규제법에 해당하는 미디어국가협약(MStV) 역시 제17조 이하에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저널리즘적 원칙에 근거한 특유 규정들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독일의 입법자들

11) Fechner, Medienrecht 21. Aufl. § 12 Rn 8.

12) Wenzel, a.a.O., § 1, Rz. 43.

은 바로 이러한 텔레미디어들 역시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출판 등 미디어의 핵심부분에 해당하며, 여기에서의 제공물 역시 개인적 그리고 여론형성에 있어서 탁월한 의미를 가진다는 헌법적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3)</sup> 이에 따라 해당 텔레미디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특별한 저널리즘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그러한 의무로는 증가된 주의의무(제19조), 확대된 간기의무(제18조) 그리고 반론보도에 관한 의무(제20조)를 들 수 있고, 특별한 저널리즘적 권리로는 정보보호법상의 미디어특권(제23조)과 관청에 대한 미디어법상의 정보청구권(제18조)이 인정된다. 또한 규제법상의 감독이 강력하게 제한되며(제109조), 나아가 온라인 언론인은 증언거부권과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특권과 압수제한을 주장할 수도 있다.<sup>14)</sup>

이와 같은 헌법적 당위성의 바탕 위에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독일의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제도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독일 반론보도 청구제도 개관

국내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우선적으로 주 출판법에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독일에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상 보장의 일환으로서 자신에 관한 표현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기여하는 개인의 권리로 이해된다. 즉, 누구든지 자신이 제3자에게 그리고 공중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길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관한 해명을 통해 이에 대응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

13) Lent, BeckOK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Gersdorf/Paal 41. Edition, MStV § 17 Rn 6.

14) Lent, a.a.O., § 17 Rn 11.

라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은 단지 공적 논쟁의 단순한 객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sup>15)</sup> 이러한 이유에서 반론보도 청구제도는 인격권을 기반으로 한 권리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독일에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본래 주 출판법상 구제수단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그 적용영역을 신문이나 출판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미디어국가협약(MStV)이나 주 미디어법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미디어국가협약(MStV)은 제20조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적용대상을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멀티미디어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sup>17)</sup> 반면에 주로 상거래를 비롯한 경제적 관점 및 저널리즘적 기능과는 무관한 개인 간 사적 통신의 관점에서 텔레미디어(Telemedien)를 규율하고 있는 텔레미디어법(TMG)은 반론보도청구 관련규정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업적 텔레미디어 제공물에 의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금지청구 혹은 제거청구권의 적용여부만이 검토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제기된 사실주장과 연관성을 가진 개인 혹은 기관이 언론의 발행인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신이 언론의 사실주장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의 해명과 함께 자신에 관한 보도를 반박할 기회를 가진다.<sup>18)</sup>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은 미디어의 권리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정정보도청구권 보다 훨씬 덜 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단지 사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만을 얻는 것이고, 반론보도 게재 의무자는 피해자의 생각에 따라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게재 의무자로서는 반론보도가 법률에 따라 혹은 판결을 통해 의무 지워진 것이라는

15) Fechner, a.a.O., § 4, Rn 132.

16) NJW 2018, 2250ff, BVerfG(3. Kammer des Ersten Senats), Beschluss vom 9.4. 2018 - 1 BvR 840/15).

17) Fechner, a.a.O., § 4, Rn 133.

18) Fechner, a.a.O., § 4 Rn 134.

내용의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는 가치분선고절차에서 해당 청구의 위험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성 역시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는 단지 반론보도를 통해서 자신의 반대 입장을 공중에 알릴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에 반해 정정보도청구의 경우는 어쨌거나 언론의 사실주장에 대한 일종의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반론보도청구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론보도는 통상적으로 정정보도가 이미 행해진 때에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9)</sup>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은 매우 엄격한 형식에 따르기 때문에 반론보도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제목 : 반론보도 ② 최초보도에 대한 지적: 모 년 모 일자 모 신문의 ○○○ 기사에 관하여 ③ 최초보도의 재현: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되었다, ④ 반박: 이 기사는 허위이다. ○○라는 사실이 맞다 ⑤ 장소, 일자 그리고 서명 등. 만약 청구권자가 이러한 형식적 요건들 가운데 일부라도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전체적으로 청구기각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전부 혹은 전무 원칙”의 적용).<sup>20)</sup>

마지막으로 독일 반론보도청구제도의 법적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sup>21)</sup>

〈표 1〉 독일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근거

신문	방송	텔레미디어
- 주 출판법	- 공영방송사의 경우: 주 공영방송법 - 다만 ARD는 ARD-국가협약, ZDF는 ZDF-국가협약 - 민영방송사의 경우: 주 미디어법	-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 단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들에만 있음 - 텔레미디어법(TMG): 반론보도 관련규정 없음

19) Fechner, a.a.O., § 4, Rn 135.

20) Fechner, a.a.O., § 4, Rn 141.

21) Fechner, a.a.O., § 4, Rn 142.

### 3.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상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수성

#### (1) 미디어국가협약의 대상으로서 텔레미디어의 의미

우선 독일의 멀티미디어 대상 반론보도 청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미디어 법제에서 말하는 “텔레미디어(Telemedien)”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일의 반론보도 청구제도는 각각의 관할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그 적용대상은 크게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의 전통적 매체와 새로운 멀티미디어를 뜻하는 텔레미디어라는 개념 하의 매체들로 나뉘기 때문이다.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조 제1항은 텔레미디어의 개념을 텔레미디어법(TMG) 제1조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서비스 혹은 방송이 아닌 모든 전자적 정보 및 통신서비스”라고 정의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미디어, 온라인-샵, 온라인중개서비스, 인터넷뱅킹, e-잡지, 채팅룸, 게임앱, 인터넷-검색엔진, 주문형 비디오, 그 밖의 스트리밍 플랫폼과 공유플랫폼, 교통 및 날씨 서비스 등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텔레미디어는 원칙적으로 허가 및 등록의무가 면제되며, 주사무소 소재지원칙이 적용된다. 즉, 독일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둔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EU 국가들에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지라도 독일법의 적용을 받는다.

#### (2) 반론보도 청구대상으로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의 의미

미디어국가협약(MStV)은 나아가 제17조 이하에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라는 복합적 개념의 멀티미디어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멀티미디어들은 제19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공인된 저널리즘적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텔레미디어들은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 언론에 준하는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20조에서는 해당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sup>22)</sup>

이와 같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7조 이하의 텔레미디어 관련 규정들은 모든 전자적 발간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구성된 텔레미디어 제공물만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에서 관찰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 역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 특히 텍스트나 영상의 정기간행물 내용 전부 혹은 일부가 재현된 제공물을 포함하는 텔레미디어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규정은 기존의 방송국가협약(RStV) 제56조를 계수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텔레미디어들은 여론형성에 대한 필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통한 균형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대중매체 성격의 텔레미디어, 즉 전자적 언론 제공물의 운영자만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하지만 제20조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면매체의 온라인판 발행인 외에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sup>24)</sup> 왜냐하면 어떠한 제공물이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구성된 제공물로 이해될 수 있는지의 정의가 이 개념이 다양한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국가협약(MStV) 자체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해석을 위해서는 전통적 매스미디어에 상응하는 저널리즘 활동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해당 텔레미디어의 제공내용이 저널리즘적 활동의 결과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sup>22)</sup> Eva Lohse, Weber kompakt, Rechtswörterbuch 9. Edition 2023.

<sup>23)</sup> Wenzel, a.a.O., § 11, Rz 346.

<sup>24)</sup>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2; Wenzel, a.a.O., § 11 Rz 342.

기준으로 요구될 수 있다. 나아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평가적 관점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며, 이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sup>25)</sup>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해석기준으로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기준으로서 보편성(내용상 다양성), 시사성(새로운 정보의 기사), 정기성(정기적 혹은 계속적 업데이트), 공개성(일반적 접근가능성)이 상황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동원될 수 있다.<sup>26)</sup> 아울러 이러한 형식적 기준들 외에도 제공물의 저널리즘 지향성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제공물에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미디어 보도를 통해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공자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지 여부, 즉 이러한 저널리즘적 지향성이 명백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단지 저널리즘 외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장식적 부속물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sup>27)</sup> 따라서 저널리즘적 목표설정의 판단에 있어서는 저널리즘적 텔레미디어 제공을 경제적 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텔레미디어 제공이나 개인의 의견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제공물과의 구분이 필수적이다.<sup>28)</sup>

한편,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이라는 표현에서 하이픈 연결은 저널리즘적이고 편집적, 즉 제공이 두 가지 전제를 중첩적으로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며, 저널리즘적 구성이란 제공내용의 선택과 구성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을 뜻한다. 한편, 편집을 거친 구성이란 정기적으로 혹은 계속적으로 기사의 선택과 편집 그리고 기사의 통제가 자연인을 통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sup>29)</sup> 결국 정기적인 언론 형태를 갖추고 온라인상에서 전파되거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모든 편집을 거쳐 제작된 서비스의 제공자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

25) Wenzel, a.a.O., § 11, Rz 346.

26) Lent, “Elektronische Presse zwischen E-Zines, Blogs und Wikis” ZUM 2013, 914 (915).

27) Lent, a.a.O., § 17 Rn 14.

28) Lent, a.a.O., ZUM 2015, 135.

29) Lent, “Besondere Impressumspflichten im Online-Journalismus”, ZUM 2015, 135.

다. 여기에는 기존의 일간신문 혹은 잡지의 온라인-버전 제공자 외에도 가령 tagesschau.de 혹은 heute.de와 같은 거대 방송사의 인터넷 포털 역시 포함되며, 타게스샤우-앱의 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전자적 언론 제공물과 구조상 다르지 않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콘텐츠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 밖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0조의 적용가능성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정기성(Periodizität)이라는 표지가 항상 결정적이다. 이때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제공물이 협소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제공 목적이 여론형성 과정에의 참여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대상으로 포섭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sup>30)</sup>

이에 따라 예컨대, E-Books은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특별한 출판의 자유의 보호 하에 놓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7조 이하의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제공물에는 속하지 않는다. 아울러 앱북, 포럼, 위키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에서 기업프로필과 같은 상업적 커뮤니티 포럼은 온라인 언론 제공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셜 네트워크의 개인프로필, 검색엔진, 뉴스모음서비스 등도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제공물이라고 할 수 없다.<sup>31)32)</sup> 반면에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텔레미디어 제공물은 전자적 출판형태의 언론 제공물로 제한되지 않고 주로 시청각적 성격의 텔레미디어 제공물, 방송에 가깝거나 방송유사적 텔레미디어 제공물 역시 포함한다는 점이 우리와 크게 다르다. 예컨대, 비디오 블로그, 비디오 포털 그리고 유튜브 채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방송과의 구분문

30)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2.

31) Lent, a.a.O., MStV § 18.

32)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미디어자유 보호범위는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구성된 텔레미디어 제공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E-Books, 앱북 역시 인쇄된 책자와 마찬가지로 출판자유 대상이 되며,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제공, 위키서비스, 포럼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보호범위 하에 놓인다. Lent, a.a.O., ZUM 2015, 135. 각주 13) 참조.

제가 대두될 수 있다.<sup>33)</sup> 따라서 유튜브 채널 등 시청각 요소가 포함된 텔레미디어 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17조 이하의 저널리즘 원칙에 따른 규율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이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3) 다른 매체와의 구분문제

텔레미디어 가운데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 가령 전자적 언론 제공물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은 그의 매체특성의 관점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과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지면매체의 머리기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전자적 언론제공물의 “티저(Teaser)”에 대해서도 그 안에 별도의 독립된 사실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제공물에 대한 반론보도가 고려될 수 있다. 나아가 웹사이트나 앱(App)에 삽입된 비디오 역시 텔레미디어 제공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실시간 제공형태가 아니라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sup>34)</sup>

아울러 지면매체나 방송과는 달리 텔레미디어에서는 문제된 기사에 대한 수정이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전통적 매체들과 구별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수정이 피해자의 요청 없이 제공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해진 경우, 이러한 사실만으로 반론보도제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처음부터 탈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최초보도가 저장, 복제 나아가 전파를 통해 확산이 가능하다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원하는 반론보도문의 허용되는 길이의 심사에 있어서도 텔레미디어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제공 가능한 공포 공간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매체와 구별된다.<sup>35)</sup>

<sup>33)</sup> Lent, a.a.O., MStV §17 Rn 9.

<sup>34)</sup> Soehring/hoene, a.a.O., §29 Rn 29.124.

#### (4) 텔레미디어의 시각적 표현 및 시청각 요소의 문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구성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의 시청각 요소에 대해서 반론보도청구 행사가 가능한지의 문제는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의 반론보도청구 규정의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선, 정기적인 전자적 언론 제공물이 텍스트 외에 시각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주장에 해당하는 이상 반론보도가 가능하다. 이는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 제1항 제1문이 “텍스트나 영상형태의 정기간행물 내용”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면과 온라인 발행의 혼종형태를 취하고 있는 전자적 언론 제공물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텔레미디어 제공물의 시청각 요소, 예컨대 온라인 지역언론 포털 내의 사진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sup>36)</sup>

둘째, 가령 신문-앱에서의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동영상 시청각 요소의 경우 어디까지 반론보도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때에도 역시 이러한 동영상 시청각 요소를 텔레미디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방송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 방송과의 경계문제가 선결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독일의 미디어법제 현황에 따르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는 단지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영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주 미디어법에서 따로 규율되기 때문이다. 미디어국가협약(MStV)의 매체분류 기준에 따르면이라도 스트리밍 제공은 각각의 구성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간 시청각 제공물인 경우에는 협약 제2조 제1항 제1문의 방송으로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면 신문의 디지털판이나 온라인 자매판에 포함된 시청각 제공물이 비실시

<sup>35)</sup>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4.

<sup>36)</sup> Lent, “Aktuelle Rechtsfragen der Gegendarstellung in elektronischen Presseangeboten”, ZUM 2016, 954(957).

간으로 제공되며 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디어국가협약 제2조 제1항 제1문의 텔레미디어에 속하게 된다.<sup>37)</sup>

셋째, 정기적인 라이브-스트리밍을 포함하는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비디오 채널(가령 유튜브 내의 비디오 채널)과 방송과의 경계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유튜브 채널을 방송법에 귀속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헌법상 기준의 관점에서는 방송인지 인터넷 매체인지와 관련해 규제가능성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38)</sup>

다만,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소송절차에서는 실무적 이유에서 하나의 제공물이 앞선 행정행위를 통해서 방송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형식적 고찰방식에 따라 제20조상의 반론보도청구권 대상에 속하는 텔레미디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제공물을 둘러싸고 방송허가를 둘러싼 행정법상 분류문제와 민사법상 반론보도 청구대상 여부의 문제에서 서로 엇갈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는 결국 법질서의 통일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sup>39)</sup>

결과적으로 전자적 언론 제공물에 포함된 시청각 요소에 대한 반론보도 가능성은 합헌적 해석차원에서 방송과 신문의 반론보도 사이에 보호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sup>40)</sup>

##### (5) 온라인 기사에서의 독자댓글(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문제

반론보도는 전자적 언론 제공자 자신의 사실주장 외에 언론 제공자에 의해 제기된 제3자의 사실주장을 상대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리의 인정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기적 출판언론에서 독자투고를 상대로 한 반

37) Lent, a.a.O., ZUM 2016, 954(957).

38) Lent, a.a.O., ZUM 2016, 954, 957.

39) Lent, a.a.O., ZUM 2016, 954, 958.

40) Lent, a.a.O., ZUM 2016, 954, 958.

론보도 법리가 참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가 전자적 언론 제공자의 온라인 기사에 달린 독자댓글에도 과연 확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sup>41)</sup>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은 제공자가 문제의 사실주장을 공개하기 전에 편집상의 선별과 심사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 제1항 제1문의 본문내용, “제기된 사실주장”이라는 표현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전자적 언론 제공물에 달리는 독자댓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작업을 통한 편집행위나 사전심사를 행하는 일이 거의 행해지지 않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적 비용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sup>42)</sup> 경우에 따라서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도움과 함께 키워드 검색을 통한 개별적이고 명백한 명예훼손 개념들을 걸러낼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익침해로서 평가되고 이때에만 반론보도청구의 행사가 가능한 사실주장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통해 걸러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sup>43)</sup>

따라서 전자적 언론 제공물의 독자댓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심사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텔레미디어 제공의 행위 의무는 권리 침해의 인식 후에 비로소, 즉 피해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고지 이후에 생겨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44)</sup> 이러한 이유에서 독자댓글 내의 사실주장은 반론보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해 반론보도의 제도상 보호 목적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반론보도는 미디어 이용자와 미디어 제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균형, 즉 미디어상의 표현이 가지는 대중성과 영향력의 관점에서 존재하는 불균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사

41) Lent, a.a.O., ZUM 2016, 954, 958.

42) Lent, a.a.O., ZUM 2016, 954, 958.

43) Lent, a.a.O., ZUM 2016, 954, 958, 각주36.

44) BGH ZUM-RD 2012, 82, Urteil des Bundesgerichtshofs vom 25. Oktober 2011 - VI ZR 93/10 - OLG Hamburg; ZUM 2012, 566, Urteil des Bundesgerichtshofs vom 27. März 2012 - VI ZR 144/11 - LG Berlin.

실이다. 하지만 독자댓글에 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댓글을 통해 이익침해적 사실주장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밖에 반론보도 게재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전자적 언론 제공자가 댓글서비스를 포기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 역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을 통해 보호되는 미디어 제공자의 구성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 제공자의 구성의 자유에는 댓글기능을 통해 온라인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공개하는 것 역시 포함되기 때문이다.<sup>45)</sup>

### Ⅲ.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상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 1.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 개요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보장하고 있는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는 기존 방송국가협약(RStV) 제56조를 계수한 것이다.<sup>46)</sup>

45) Lent, a.a.O., ZUM 2016, 954, 958.

46) 제20조 반론보도

(1)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 특히 텍스트나 영상형태의 정기간행물의 전부 혹은 일부내용이 재현된 제공물을 포함하는 텔레미디어 제공자는 자신의 제공 내에서 제기된 사실주장을 통해 관련된 개인 혹은 기관의 반론보도를 자신의 제공 내에서 지체 없이 게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반론보도는 피해당사자의 비용부담 없이 게재되고 독자들은 추가의 검색이용료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반론보도는 대상이 된 사실주장과 동일한 형태로 첨가와 생략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반론보도는 대상이 된 사실주장이 게재되는 동안 그와 직접 연결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사실주장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거나 반론보도의 게재 전에 제공이 종료된 경우, 반론보도는 원래 제공된 사실주장이 게재되었던 기간만큼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반론보도에 대한 재판박은 사실적 진실로 제한되어야 하며, 반론보도와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2) 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게재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반론보도에 어떠한 정당한 이익도 가지지 않는 경우,
2. 반론보도의 범위가 대상이 된 사실주장을 부당하게 넘어설 경우,
3. 반론보도가 사실적 제공으로 제한되지 않았거나 형사처벌 가능한 내용을 포함

출판법과 방송법은 각각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협약 제20조는 기존의 방송국가협약(RStV) 제56조에서와 동일하게(이 역시 미디어서비스협약 제14에서 유래) 피해자의 반론권을 특정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텔레미디어로 확대했다.<sup>47)48)</sup>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는 텔레미디어에 대한 별도의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독자적인 법적 청구근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반론보도청구서가 제공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예컨대, 텔레미디어를 통해서도 자신의 콘텐츠를 전파하는 출판언론사의 경우에는 지면매체와 텔레미디어에 각각 별도의 반론보도청구서가 송달되어야 하며, 각각의 독자적인 법적 요청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반론보도를 통해 반박되어야 할 내용이 동일한 것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sup>49)</sup>

반론보도 게재의무는 금지의무, 취소의무, 손해배상 지급의무와는 달리 미디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고 진실한 최초보도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이에 허위의 반론보도가 게재될 위험성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피해자의 반론권은 대상 미디어의 지속적인

하고 있을 경우,

4. 반론보도가 지체 없이, 늦어도 대상 텍스트 제공일자로부터 6주 이내에, 하지만 적어도 제공의 최초입력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문서로 그리고 피해당사자 혹은 그의 법적 대리인의 서명 하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
- (3)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론보도청구의 관철을 위해서는 정식의 소송절차가 제공된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가처분선고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들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청구에 대한 위협이 소명될 필요는 없다. 본안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 (4) 국제의회기구의 공개회의, 연방과 주들의 입법기관 그리고 각각의 주 출판법이 언론법상 반론보도를 제외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과 관청에 관한 진실에 입각한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47) Fiedler, BeckOK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Gersdorf/Paal 41. Edition, MStV § 20

48) Sajuntz/Wiggenhor, Hasselblatt, MAH Gewerblicher Rechtsschutz 6. Auflage 2022, Rn 112.

49) Wenzel, a.a.O., § 11, Rz 339.

대중적 영향력으로 인해 정당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반론권은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통해 개입하는 각각의 미디어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을 통한 개별적 관련성을 전제로 하며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표되어야 할 사실적 반박만을 허용한다.<sup>50)</sup>

## 2.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의 실질적 요건

### (1) 언론에 가까운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텔레미디어(제1항 제1문)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에 따른 반론보도청구권의 실질적 전제 조건은 대체로 전통적 매체와 구별되는 다른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20조에 명시된 텔레미디어(Telemedien)의 특징으로 인해 반론보도가 가능한 미디어, 반론보도의 범위, 비용부담 등의 특별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sup>51)</sup>

신문과 방송에서의 반론보도의무는 자신의 미디어 플랫폼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중매체를 통한 발언권을 제공할 목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상에서 개개인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공표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언론의 기사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은 종종 기술적으로 쉽게 반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이유로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제한이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유사한 발언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동일한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최초보도를 한 매체에서 행해져야 할 반론권의 정당성은 제20조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sup>52)</sup>

<sup>50)</sup> Fiedler, a.a.O., MStV § 20

<sup>51)</sup> Fiedler, a.a.O., MStV § 20 Rn 1.

<sup>52)</sup> Fiedler, a.a.O., MStV § 20 Rn 2.

## 1) 정기적 디지털 언론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 특히 텍스트나 영상형태의 정기간행물 전부 혹은 일부 내용이 재현된 제공물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정기적 디지털신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최대 6개월 이하의 간격으로 하나의 섹션 하에 공표되는 모든 디지털 기사모음을 포함한다.<sup>53)</sup>

### a.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판 혹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기사모음

우선, 각각의 개별적 디지털 신문판이나 디지털 잡지판에서 편집된 기사모음 일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디지털 기사모음이 계속해서 최신기사와 함께 업데이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문기사가 디지털판에서 통째로 전송되던지 아니면 신문의 웹사이트에서 상시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던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sup>54)</sup>

### b. 혼성형태와 순수한 디지털 언론

그 다음으로 인쇄형태와 함께 디지털형태로 발행되는 혼성형태의 발간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정기적 디지털 언론 역시 포함된다. 이러한 해석은 제20조 제1항 제1문의 “특히”라는 예시적 표현을 통해 포섭대상이 개방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sup>55)</sup>

### c. 비정기적 디지털 발간물과의 구분

이에 반해 비정기적 디지털 발간물인 온라인 북, 에세이, 진단지는 반론보도의무가 없다. 사실주장이 신문기사보다 더 강력하게 피해자와 연

<sup>53)</sup> Fiedler, a.a.O., MStV § 20 Rn 4.

<sup>54)</sup> Fiedler, a.a.O., MStV § 20 Rn 5.

<sup>55)</sup> Fiedler, a.a.O., MStV § 20 Rn 6.

관성을 가지는 유명 저널리스트의 온라인 베스트셀러 서적의 경우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반론보도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sup>56)</sup>

한편, 디지털 언론제공의 정기성(Periodizität) 판단을 위해서는 주 출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면신문의 정기성 판단기준, 즉 6개월 이하라고 하는 재발행 기준이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연간보고서는 당연히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발행 사이의 간격이 6개월보다 짧을 경우일지라도 새로운 텍스트가 이성적 독자의 관점에서 일관된 발간의 일부로서 보이는지 아니면 그냥 별도의 문서로서 비정기적 디지털 출판으로 보이는지 판단이 필요하다.<sup>57)</sup>

#### d. 정리

신문과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의 디지털판, 즉 혼성형태의 전자적 온라인 제공물은 최소한 6개월 내로만 발행되는 이상 반론보도의무를 지며, 순수한 디지털신문이나 잡지 내지 6개월 이내로 발행되는 온라인 발간물, 즉 해당기사가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함께 발행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기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러한 제공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전형적인 언론사나 많은 블로그들의 편집적 구성과 축약 하에서 새로운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제공물이나 기업 혹은 프리랜서의 홈페이지에서 특정주제에 관한 보도영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sup>58)</sup>

인터넷 포털 역시 사실성, 전문적 작업방식 그리고 정기적 발행방식을 통한 일정 정도의 조직적 안정성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제공물에 해당한다. 다만, 대규모 청중에 도달되어야 한다거나 제공자가 상업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은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sup>59)</sup>

<sup>56)</sup> Fiedler, a.a.O., MStV § 20 Rn 8.

<sup>57)</sup> Fiedler, a.a.O., MStV § 20 Rn 9.

<sup>58)</sup> Fiedler, a.a.O., MStV § 20 Rn 13f.

이에 반해 정기적 성격이 없는 발행물, 즉 E-Book, 에세이, 디지털연감, 지속적인 보도가 없는 캠페인-홈페이지 등등은 포함되지 않는다.<sup>60)</sup> 위키 서비스나 포럼 역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제공이라는 전제를 통상 충족시키지 못한다.<sup>61)</sup>

## 2)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주문형 비디오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 제1항 제1문의 “특히(insbesondere)”라는 표현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제공물의 유형을 단지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접 명시된 정기간행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현한 제공물 외에도 순수한 디지털언론이나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사모음 역시 포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에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주문형 비디오 역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디오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미디어 서비스(미디어 플랫폼) 내에서 제공될 경우에는 당연히 반론보도의무를 지게 된다.<sup>62)</sup>

다만, 제20조의 개별적 반론보도 의무규정은 방송의 반론보도기준과 비교했을 때 시청각 요소의 포섭의도가 뚜렷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제20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단지 “대상이 된 텍스트”라고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다툼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의 입법이유서에서는 제20조가 “일반규정”의 장 아래에 위치한 “텔레미디어” 속에 배치되는 새로운 규정방식을 통해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미디어국가협약(MStV)가 모든 텔레미디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제20조에 정기적인 시청각 텔레미디어가 포섭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sup>63)</sup>

59)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2.

60) Fiedler, a.a.O., MStV § 20 Rn 13f.

61)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2.

62) Fiedler, a.a.O., MStV § 20 Rn 15.

이는 구 방송국가협약(RStV) 제56조상의 반론보도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텔레미디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온라인-영화관이나 온라인-비디오텍에서의 다큐멘터리영상물과 같이 독자적 공표물로 보이고 정기적인 미디어의 일부로 보이지 않는 비디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sup>64)</sup>

### 3) 피청구인

반론보도청구의 피청구인은 사실주장이 제기된 텔레미디어의 제공자이다. 디지털 언론의 경우에는 발행인 내지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유한 자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미디어국가협약(MStV)은 주 출판법이 반복해서 규정했던 편집국 책임자의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sup>65)</sup>

한편, 텔레미디어 제공자라 할지라도 단순한 호스트-프로바이더의 경우는 반론보도를 제3자의 제공 내에 입력하거나 이를 전달해야 할 어떠한 의무나 권리도 없다. 단순한 호스트-프로바이더는 타인의 콘텐츠를 저장하는 제공자로서 텔레미디어법(TMG) 제10조에 따르면 구체적 내용에 관해 인지한 이후 문제의 정보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지체 없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sup>66)</sup>

더군다나 어떤 제3자 제공에 대한 접근만을 중개하는 소위 액세스-프로바이더 역시 반론보도의 의무는 없으며,<sup>67)</sup> 이러한 액세스-프로바이더는 원칙적으로 지면매체에 있어서 소매상이나 도매상의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반론보도제에 위한 의무부과는 적절하지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sup>68)</sup>

63) BayLT Drs. 18/7640, 91.

64) Fiedler, a.a.O., MStV § 20 Rn 15.

65) Fiedler, a.a.O., MStV § 20 Rn 16.

66) Wenzel, a.a.O., § 11, Rz 344.

67) Fiedler, a.a.O., MStV § 20 Rn 17.

68) Wenzel, a.a.O., § 11, Rz 343.

## (2) 청구인, 최초보도로써 사실주장(제20조 제1항 제1문)

사실주장과 연관된 모든 개인 혹은 기관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인, 인적 결사체 및 기타 인적 그룹 아울러 관청 및 가령 직장협의회와 같은 기타단위가 청구자격을 가진다. 아울러 연관성은 문제의 사실주장이 구체적·개인적 방식으로 청구권자의 권리영역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의미한다.<sup>69)</sup>

한편, 반론보도청구는 단지 사실주장에 대해서만 가능하다.<sup>70)</sup> 그런 점에서 텔레미디어의 사실주장에 관한 어떤 고유한 특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주장은 텔레미디어 제공자의 제공물 내에서 제기되어야 하고, 이것이 자신의 콘텐츠인지 타인의 콘텐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아가 어떤 장소에서 검색가능한지, 문제의 사실주장이 제공자의 제공 내에서 텍스트나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시청각 비디오 혹은 이것들의 결합 형태로 제기되었는지도 상관없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이나 최초 보도에 링크를 걸어 놓은 앱의 초기화면에 게시된 헤드라인의 재생 목록, 즉 티저(Teaser)에서도 반론보도청구는 가능하다.<sup>71)</sup>

## (3) 반론보도로써 사실주장(제20조 제2항 제3호)

반론보도는 사실주장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반론보도 내에 의견표현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제공자는 반론보도청구 전부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내용측면에서도 반론보도의 사실주장은 최초보도의 반박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주장은 마찬가지로 전체 반론보도의 거부에 이를 수 있다.<sup>72)</sup>

<sup>69)</sup> Fiedler, a.a.O., MStV § 20 Rn 18.

<sup>70)</sup> Fiedler, a.a.O., MStV § 20 Rn 19.

<sup>71)</sup> Wenzel, a.a.O., § 11, Rz 353.

<sup>72)</sup> Fiedler, a.a.O., MStV § 20 Rn 20.

#### (4) 예외사유

##### 1)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제20조 제2항 제1호) 형사처벌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제20조 제2항 제3호)**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은 첫째, 반론보도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사실인 경우 부인된다. 청구권자에게 명백히 거짓말을 위한 권리는 없으며, 명백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반론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둘째, 반론보도가 모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은 부인된다.<sup>73)</sup>

제공자가 반론보도를 자신의 제공물 내에서 정확하게 게재한 경우에도 통상 추가의 반론보도청구를 위한 정당한 이익은 탈락한다. 이때에는 다만 반론보도가 최초보도와 동일한 이용자층에 도달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며, 이는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 내에 반론보도를 게재된 경우를 말한다.<sup>74)</sup>

##### 2) **반론보도가 적절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제20조 제2항 제2호)**

반론보도의 범위는 부당하게 최초보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판단기준은 주장이 제기된 기사전체가 아니라 문제된 구체적 사실주장이 결정적이다. 다만, 반론보도에서 최초보도의 언급을 위한 공간은 반론보도의 적절범위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원칙적으로 반론보도가 최초보도의 길이와 같을 때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좀 더 긴 반박내용 역시 처음부터 배제되지 않으며, 이는 개별적인 모든 사정을 근거로 반박권의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sup>75)</sup>

<sup>73)</sup> Fiedler, a.a.O., MStV § 20 Rn 21.

<sup>74)</sup> Wenzel, a.a.O., § 11, Rz 354.

<sup>75)</sup> Fiedler, a.a.O., MStV § 20 Rn 22.

이때 제20조 제2항의 적절성 제한규정이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일부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반론보도의 공표범위를 지면신문보다 기술적으로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편집기사 내용에 대해 제3자의 반박을 공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미디어자유에 대한 중대한 개입으로서 적절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고, 피해자 자신이 원하는 양만큼 반박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출판본 내용이 그대로 공표되고 전파되는 디지털 신문과 잡지의 경우에는 인쇄판 형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약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디지털 뉴스매거진에서도 객관적인 적절성의 고려 없이 여러 페이지에 걸친 반론보도를 게재해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출판 및 미디어자유 요체는 각각의 미디어 콘텐츠를 스스로 구성하고 이를 독자에게 제공할 자유이기 때문이다.<sup>76)</sup>

### 3) 광고에 대한 반론보도 가능성 문제

단지 상거래에서만 이용되는 광고내의 사실주장은 주 출판법에 따르면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다(예컨대,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제11조 제2항, 작센주 출판법 제10조 제2항 제3호, 베를린주 출판법 제10조 제2항 제1문). 이에 반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에서는 광고에 관한 어떤 명시적 예외조항을 발견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도 광고의 사실주장은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반론보도에 담기게 될 경쟁업체의 유사광고를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반론보도청구권의 책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광고성격의 반론보도를 원하는 경쟁자와의 관계에서도 편집국과 피해자 사이에 원칙적으로 존재하는 보도상의 불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광고의 사실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경쟁자는 스스로 자신의 광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동일한 영향력 행사

<sup>76)</sup> Fiedler, a.a.O., MStV § 20 Rn 23.

의 기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7)</sup>

#### 4) 의회와 입법기관의 공개회의에 관한 진실에 입각한 보도의 경우 (제20조 제4항)

의회나 입법기관의 공개회의에 관한 진실에 입각한 보도는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전제는 해당 보도가 적절한 인상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개회의에서 개진된 원래의 진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울러 각각의 주 출판법을 근거로 법원심리에 관한 보도 역시 반론보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sup>78)</sup>

#### (5) 피해자와 독자의 비용문제(제20조 제1항 제1문)

편집영역에서의 반론보도는 피해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독자들에게도 반론보도의 검색을 위한 어떠한 추가비용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최초보도가 가령 디지털 잡지판과 같이 유료로 이용가능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내의 유료섹션에서 전파된 경우, 반론보도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일한 유료의 디지털판 내지 유료섹션 내에 게재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론보도의 접근에 대해서만 추가의 별도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sup>79)</sup>

### 3. 형식적 요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상의 반론보도는 개인이나 기관과 연관

<sup>77)</sup> Fiedler, a.a.O., MStV § 20 Rn 24.

<sup>78)</sup> Fiedler, a.a.O., MStV § 20 Rn 26.

<sup>79)</sup> Fiedler, a.a.O., MStV § 20 Rn 27.

된 모든 사실주장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밖에 어떤 또 다른 실질적 조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반론보도는 최초주장이 진실이고 적법한 경우에도 공표될 수 있으며, 심지어 반론보도 자체가 허위인 경우에조차 공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론보도 행사범위의 사실상의 확장을 조정하기 위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는 엄격하고 필수적인 형식적 조건에 구속되며, 제공자는 형식적 요건의 위반 시에 반론보도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sup>80)</sup>

### (1) 반론보도의 문서형식과 서명(제20조 제2항 제4호)

반론보도는 문서형식으로 송달되어야 하고 피해자나 그의 법적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여기에 임의대리인은 가능하지 않다.<sup>81)</sup>

그에 반해 반론보도 게재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데 그치는 절차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리고 임의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민법 제174조 제1문을 고려할 때 대리인은 자신의 대리권 수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sup>82)</sup>

### (2) 반론보도의 지체 없는 송달

텔레미디어에 있어서도 반론보도문은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되어야 하며, 지면신문과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이 고려될 수 있다.<sup>83)</sup>

반론보도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그리고 과실로 인한 지연 없이 송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변적인 기간은 두 개의 제척기간을 통해 보완된다. 즉, 송달은 마지막 제공일로부터 6주 이내에 그리고 문제된 기사

<sup>80)</sup> Fiedler, a.a.O., MStV § 20 Rn 29.

<sup>81)</sup> Fiedler, a.a.O., MStV § 20 Rn 30.

<sup>82)</sup> Fiedler, a.a.O., MStV § 20 Rn 31.

<sup>83)</sup>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5.

의 최초제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나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 구속되지 않는다.<sup>84)</sup>

한편, 이러한 제20조상의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비판견해가 존재한다. 즉 제20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늦어도 대상 사실주장의 최초입력 3개월 이내에 반론보도청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반론보도청구권이 탈락하게 되는데, 문제는 최초 입력된 사실주장이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청구권이 탈락한다는 사실이다. 이 규정의 입법이 유서에 따르면 주 출판법 규정을 따랐다고 설명되어 있지만 이는 수궁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주 출판법의 제척기간은 대상 사실주장의 공표일을 기산점을 삼고 있고, 이에 따라 신문 등 출판물의 경우에는 공표 이후 3개월을 초과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은 배제된다. 다만 그 사이에 신문이 대상 표현을 재차 반복한다면 새로운 공표가 존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새로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텔레미디어의 콘텐츠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제공되는 경우, 즉 항상 새롭게 공표되는 경우에 이러한 텔레미디어 내의 지속적 제공은 지면매체의 새로운 발행 때마다 사실주장이 반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미처 간과하지 못한 해당조항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sup>85)</sup>

### (3) 표현법상 “전부 혹은 전무 원칙(Alles-oder nichts-Prinzip)”

피해자의 반론보도문은 개별적인 사항들이 축약되지 않은 상태로 원문 그대로 게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공자에 의해 부당하게 축약된 경우, 그러한 반론보도문의 게재는 제대로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발행인 또는 기타 제공자는 반론보도를 수정할 어떠한 의무나 권한도

<sup>84)</sup> Fiedler, a.a.O., MStV § 20 Rn 32.

<sup>85)</sup> Wenzel, a.a.O., § 11, Rz 355.

가지지 못한다.<sup>86)</sup>

#### 4. 반론보도게재의 이행요건

텔레미디어의 매체특성으로 인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는 신문이나 방송과는 상이한 반론보도 게재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텔레미디어의 반론보도 게재문제는 무기평등의 원칙에서 텔레미디어의 특수성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sup>87)</sup>

##### (1) 지체 없이(제20조 제1항 제1문)

반론보도청구가 모든 내용상 그리고 형식상 요청들을 충족한 경우, 제공자는 지체 없이 동시에 과실에 의한 지연 없이 자신의 제공물 내에 반론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제공자에게 게재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에는 법적 조력자의 자문 하에 반론보도에 대한 법적 그리고 사실적 심사가 가능한 기간이 포함될 수 있다. 일간 혹은 주간단위로 공표되고 전파되는 디지털 신문이나 디지털 잡지의 경우 “제공 내에서의 지체 없는 게재”란 원칙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는 다음 판에서의 공표로 이해될 수 있다.<sup>88)</sup>

##### (2) 무기평등의 원칙(제20조 제1항 제2문-제4문)

###### 1) 반론보도 게재방법

반론보도는 첨가 또는 생략 없이 제공 내에 게재되어야 한다(제1항

<sup>86)</sup> Fiedler, a.a.O., MStV § 20 Rn 33.

<sup>87)</sup> Fiedler, a.a.O., MStV § 20 Rn 34.

<sup>88)</sup> Fiedler, a.a.O., MStV § 20 Rn 35.

제2문). 반론보도는 가능한 한 최초보도의 독자층에 도달해야 하며, 따라서 제공되었던 동일한 부분에서 그리고 동일한 활자크기로 공표되어야 한다.

반론보도는 최초보도가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제1항 제3문). 다만, 입법자는 이러한 직접연결요청을 단지 웹 제공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사서비스만을 염두에 두었고, 독자들에게 통째로 넘겨져서 해당기사와 나중에 반론보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89)</sup>

어쨌든 직접 연결 요청은 최초보도와 반론보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화면에서 나타날 때 충족된다. 이때 문제된 사실주장과 반론보도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전체 텍스트나 기사내용 혹은 전체 제공과 반론보도가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특히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보일 수 없는 광범위한 내용의 경우에는 이의 제기된 사실주장과 반론보도 혹은 반론보도 안내가 항상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보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sup>90)</sup>

그리고 이러한 직접 연결 요청은 최초표현에 바로 접근이 가능한 반론보도 안내표시가 명백하게 설정되었을 경우에도 충족된 것으로 보며, 여기에는 특히 링크설정 역시 포함된다.<sup>91)</sup> 이러한 링크설정을 통한 연결의 전제조건은 링크설정이 표시된 텍스트에서 반론보도로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는 안내표시가 이용자에게 분명히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sup>92)</sup> 또한 이러한 링크설정을 통한 반론보도의 안내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반론보도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만약 여러 번의 클릭이나 여러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이는 직접적 연결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sup>93)</sup> 아

<sup>89)</sup> Fiedler, a.a.O., MStV § 20 Rn 38.

<sup>90)</sup> Wenzel, a.a.O., § 11, Rz 356.

<sup>91)</sup> LG Afp 2009, 165(166).

<sup>92)</sup>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6.

<sup>93)</sup> Wenzel, a.a.O., § 11, Rz 356.

올리 최초보도가 단지 검색기능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면, 검색할 때마다 최초보도와 반론보도의 안내표시가 함께 게재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sup>94)95)</sup>

## 2) 반론보도 게재기간 및 게재위치

텔레미디어라는 매체특유의 특수성으로 인해 배치기간의 지속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텔레미디어 서비스는 통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sup>96)</sup> 따라서 제20조 제1항은 “반론보도는 최초보도가 지속되는 동안 이와 직접 연결해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7)</sup>

하지만 최초보도가 반론보도 청구시점이나 반론보도 게재 이전에 의무자의 온라인 제공에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경우, 반론보도는 제공내의 최초보도가 게재되었던 유사한 위치에 게재되어야 한다. 대체로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제공하는 텔레미디어의 경우라면 반론보도는 동일한 섹션에 게재되어야 하고, 최초보도와 마찬가지로 쉽고 빠르게 이용자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예컨대 홈페이지에서 섹션의 선택과 기사의 선택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었다면, 반론보도 역시 이와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sup>98)</sup>

다만, 개별 매체 각각의 기술적 한계에서 제약이 생겨날 수 있다. 편집국에 의해서도 수정될 수 없는 고정된 디자인형태를 취하고 있는 앱 초기화면을 단지 반론보도게재를 위해 프로그래밍 변경까지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즉, 무기평등의 원칙이 매체의 기술적

94) LG Afp 2009, 165(166).

95) Fiedler, a.a.O., MStV § 20 Rn 37.

96)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6.

97) Fiedler, a.a.O., MStV § 20 Rn 39.

98) Fiedler, a.a.O., MStV § 20 Rn 39.

프로그래밍 변경까지 요구할 수 있지는 않으며, 이것은 미디어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구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sup>99)</sup> 이와 함께 프로그래밍 변경의 필요한 시간소모가 종종 반론보도의 적시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며, 문제된 언론 제공물이 제3자의 플랫폼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제공자 자신의 프로그래밍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반론보도는 기술적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sup>100)</sup>

마지막으로 반론보도는 최초보도가 제공되었던 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한다.<sup>101)</sup>

### 3) “동일한 형태”로 제공의 의미

반론보도는 문제된 사실주장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2문). 반론보도가 “동일한 형태로” 공표되어야 한다는 의무는 이전에 단지 자를란트주 출판법에만 존재했었던 것인데, 헌법상의 우려로 인해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구성의 정체성과 관련된 의무는 무기평등의 원칙을 통해서도 요구되어서는 안 되며,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sup>102)</sup>

한편,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건에서 최초보도가 비디오나 이와 비슷한 시청각적 표현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반론보도 역시 비디오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기적인 출판간행물의 경우에는 사진 등 영상표현에 대해서 반론보도가 원칙적으로는 텍스트를 통해서 행해지고 반드시 불가피한 예외사례에 있어서만 반박사진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자적 언론 제공물

99) Wenzel, a.a.O., § 11, Rz 357; Lent, a.a.O., ZUM 2016, 954, 960.

100) Lent, a.a.O., ZUM 2016, 954, 960.

101) Fiedler, a.a.O., MStV § 20 Rn 40;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6; Wenzel, a.a.O., § 11, Rz 358.

102) Spindler/Schuster/Mann RStV § 56 Rn 21.

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을 통해 보호되는 전자적 언론 제공자의 편집상의 구성자유 및 비례원칙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반박사진을 통한 반론보도의 공표는 피해자 이익의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만 요구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진은 종종 평가적이고 주관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각도 선택, 사진편집, 명암, 피사계심도 등등) 역시 고려되어야 하며, 그 때문에 반박사진은 사실에 대한 사실원칙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sup>103)</sup>

나아가 전자적 언론 제공물 내에 삽입된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시청각 요소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는 텍스트를 통해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반박비디오의 공표는 제20조 제2항 제4호에서 필수적인 문서형식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될 수 없다. 게다가 비디오의 주관적-평가적 표현방식(영상물의 서사구조, 카메라 동선, 음향, 편집 등등)은 반박사진 보다 한층 더 강한 정도로 사실 대 사실원칙에 반할 것이다.<sup>104)</sup>

이어서 반론보도문의 공표는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자적 언론제공물 내의 게재를 통해 행해지면 된다. 따라서 청구권자에 의해 낭독된 반론보도문을 녹화해서 공표할 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제공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는 시청각적 녹화물을 제공 내에 게시할 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요구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제공자의 편집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것이다.<sup>105)</sup>

결국 동일한 형태라는 구성요건에 관해서 입법자는 오히려 반론보도의 주목도가 최초보도에서와 동일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추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여기에서는 반론보도문의 크기, 컬러 등등이 중요할 것이다. 다만, 텔레비전에서 반론보도가 공표되었고 이 텔레비전 영상이 텔레미디어 제공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을 경우에 텔레미디어의 반론보도의무는 텔레비전에서 낭독된 반론보도의 제공을 통해

103) Lent, a.a.O., ZUM 2016, 954, 959.

104) Lent, a.a.O., ZUM 2016, 954, 959.

105) Lent, a.a.O., ZUM 2016, 954, 959.

서 충족될 수 있다.<sup>106)</sup>

### (3) 반론보도에 대한 편집국의 반박입장 달기 금지(제20조 제1항 제5문)

#### 1) 반론보도에 입장 달기 금지원칙

반론보도에 대한 편집국의 반박은 사실주장으로 제한되며, 반론보도와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제20조 제1항 제5문). 따라서 편집국의 반론보도에 대한 평가적 진술(Redaktionsschwanz), 소위 꼬리 달기는 금지되며,<sup>107)</sup> 직접적 반박뿐만 아니라 링크 걸기, 그밖에 반론보도에 대한 참조사항의 설정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무자의 주해 달기 금지원칙(Glossierungsverbot)은 신문이나 방송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다.<sup>108)</sup> 하지만 이와 결부된 기본권 보호영역으로의 개입으로 인해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상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sup>109)</sup>

반면에 다툼이 된 주제에 관해 편집국 자신의 의견표현이나 평가적 보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평가적 보도가 반론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상, 이는 반론보도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반론보도가 방송된 이후에도 관련 주제들에 관해 계속해서 보도해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존재한다. 입장 달기 금지원칙은 단지 반론보도에 대한 직접적 입장 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반론보도와 의 직접적 관련성만을 전제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개념상 어떠한 반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동일한 주제에 관한 또 다른 보도로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또 다른 보도는 텔레미디어 제공자에게 거부되지 않는데, 동일

106) Wenzel, a.a.O., § 11, Rz 359.

107) Fiedler, a.a.O., MStV § 20 Rn 41.

108) Soehring/hoene, a.a.O., Rn 29.127.

109) Wenzel, a.a.O., § 11 Rz 360.

한 사안일지라도 그에 관한 포괄적 반복보도는 가능하기 때문이다.<sup>110)</sup>

한편, 제20조에 따른 반론보도는 진실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공표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반론보도의 법적 성격에 관한 편집국의 설명은 언제나 허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균독자들에게 종종 반론보도가 어떤 점에서 잘못된 최초보도를 해명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sup>111)</sup>

## 2) 반론보도와 직접 연결 금지원칙

편집국의 반박은 반론보도와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제20조 제1항 제5문). 이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도 입법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논란이 제기된다.<sup>112)</sup> 하지만 반론보도의 법적 성격이 진실 혹은 허위와 무관하게 게재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법적 상황에 대한 지적은 편집국의 반론보도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편집국 해명은 피해자의 반론문과 직접 연결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sup>113)</sup>

베를린 상급법원(Kammergericht Berlin)은 반론보도에 대한 반박의 직접 연결 금지규정을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출판 및 미디어자유)에 대한 독자적이고 중대한 개입이지만, 그럼에도 정당화된 개입이라고 판시했다.<sup>114)</sup> 즉, 설사 직접 연결 금지가 진실발견 절차의 차단과 연결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감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러한 금지가 출판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측의 반론보도가 자신의 최초 보도의 허위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반론보도문의 진실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미디어 측의 반박권은 반론보도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미디어의 상보적 진술로서 이해한다. 따라서 만약 편집

110) Wenzel, a.a.O., § 11 Rz 361.

111) Fiedler, a.a.O., MStV § 20 Rn 43; Wenzel, a.a.O., § 11 Rz 360.

112) Soehring/hoene, a.a.O., Rn 29,127.

113) Fiedler, a.a.O., MStV § 20 Rn 44, 45.

114) KG ZUM-RD 2012, 388.

국이 자신의 표현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는 어떠한 안내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필수적인 의사소통의 자유의 희생 하에 무기평등의 원칙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sup>115)</sup>

결론적으로 편집국은 반론보도와 자신의 반박을 반론보도의 진술이 왜곡되는 방식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직접 연결 금지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합헌적 해석차원에서 적절할 것이다.<sup>116)</sup>

### 5. 법원에의 권리주장(제20조 제3항)

반론보도청구권은 민사소송법 제935조 이하의 가처분선고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관철될 수 있다(제20조 제3항). 이때 긴급성은 소명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본안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sup>117)</sup>

그리고 제20조 제3항 제1문의 “받아들여지지 않은”의 요건이 반드시 법원 소제기 전에 권리주장이 있어야만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식의 필수적 전치절차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미디어 측 의무자가 소제기를 위한 계기를 제공하기 전에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미디어 측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나서 이후에 소송비용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소송제기를 위한 계기란 우선적으로 의무자가 반론보도 게재를 명백히 거부하거나 게재여부에 관한 법적으로 적절한 해명기간을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sup>118)</sup>

한편, 법원이 법적 판단과정에서 반론보도문을 수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 혹은 일부항목의 불허사유로 인해 전체적으로 기각해야 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최초보도의 개별

115) Fiedler, a.a.O., MStV § 20 Rn 46.

116) Soehring/hoene, a.a.O., Rn 29,127.

117) Fiedler, a.a.O., MStV § 20 Rn 48.

118) Fiedler, a.a.O., MStV § 20 Rn 48.

진술들을 반론보도가 가능하지 않은 의견표현으로 간주하거나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의견표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제한된 사유에서만 이를 사실주장의 요건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sup>119)</sup>

## IV. 미디어국가협약 제18조상의 간기의무

### 1. 개관

텔레미디어에 대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기의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반론보도청구서가 송달되어야 할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반론보도청구권은 실무상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아무튼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은 온라인 언론 제공물에 대한 특별한 간기의무(Impressumpflichten)을 규정한다. 이러한 저널리즘상의 간기의무는 누가 게재내용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는 식별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sup>120)</sup>

인쇄매체에 대한 간기의무는 주 출판법이 규율하고(예컨대, 노스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제8조), 방송매체에 대해서는 주 미디어법(예컨대, 노스트베스트팔렌주 미디어법 제31조)이 규율한다. 이에 더해 일부에서는 미디어 전반에 걸친 간기규정들도 존재한다(라인란트 팔츠 주 미디어법 제9조). 이와 달리 온라인 언론 제공물에 대해서는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이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Telemedien mit 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n Angeboten)에 대해 간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121)</sup> 이것은 소위 확대된 표시의무로

119) Fiedler, a.a.O., MStV §20 Rn 49.

120) Lent, a.a.O., ZUM 2015, 134.

121) 제18조 정보의무와 정보권

① 전적으로 개인적 혹은 가정적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텔레미디어 제공자는 다

서 다른 텔레미디어에 대한 표시의무를 넘어서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제18조 제2항의 간기의무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며, 미디어 공표와 상충하는 상대방의 법익보호에 기여하는 일종의 규제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법 제5조 제2항이 말하는 일반법에 해당하고, 전자적 언론 제공물의 기본권 보호를 제한하게 된다.<sup>122)</sup>

제18조 제2항은 특히 텔레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보호, 특히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확대된 표시의무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을 통해 보호되는 공공의 의사소통절차 및 여론형성절차의 개방성에 기여하고 이용자에게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최소한의 투명성과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간기의무는 헌법상의 실제적 조화의 원칙관점에서 제공자 이익, 이용자 이익 그리고 공공질서 이익의 조정이 보장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sup>123)</sup>

한편, 제18조 제2항에 따른 책임자의 지명의무의 핵심은 다른 많은 텔레미디어 제공자에게도 적용되는 텔레미디어법 제5조, 제6조상의 정보

---

음의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유지해야 한다:

1. 이름과 주소 및
  2. 법인의 경우에도 승인된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 ②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 특히 텍스트나 영상의 정기간행물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재현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의 제공자는 텔레미디어법 제5와 제6조에 따른 정보에 추가해서 이름과 주소정보가 포함된 책임자를 지명해야 한다. 여러 책임자가 지명된 경우, 각각의 지명자가 서비스의 어떤 부분을 책임지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1. 내국에 지속적 체류하는 사람
  2. 공직을 차지할 자격을 법원판결을 통해 상실하지 않는 사람
  3. 사업활동에 제약이 없는 사람
  4. 형사소추 가능성에 제약이 없는 사람만이
- 책임자로서 지명될 수 있다.
- 제3문 제3호와 제4호는 청소년을 위해 결정된 텔레미디어를 책임지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22) Lent, a.a.O., ZUM 2015, 134.

123) Lent, a.a.O., ZUM 2015, 134.

제공의무와는 다른 온라인 언론 제공물에서의 특별한 간기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다.<sup>124)</sup>

## 2.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sup>125)</sup>에 적용된다. 여러 제공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제공물마다 독자적인 간기의무가 존재한다. 이때 여러 제공물이란 대상그룹이 볼 때 제공목적에 따라 각각 그 자체로 독립된 제공물일 경우를 말하며, 전체적인 종합적 평가에 비추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제공으로 보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sup>126)</sup>

## 3.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 제1문은 텔레미디어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제공자의 정보의무 참조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전자적 언론 제공물은 규범목적이나 모든 형태의 온라인 저널리즘에 존재하는 투명성 요청에 비추어 그것이 텔레미디어법 제5조의 전제 조건인 상업성과 유료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텔레미디어법 제5조 제1호-제7호의 요청정보들을 어쨌든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정기구독이나 광고를 통해 유지되는 전문적인 전자적 언론 출판물 외에 광고지원 없는 일반인 언론 제공물도 정보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령 저널리즘적 블로그나 마이크로 블로그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sup>127)</sup>

<sup>124)</sup> Lent, a.a.O., ZUM 2015, 140.

<sup>125)</sup>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의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Telemedien mit 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n Angeboten)의 개념에 관해서는 앞의 제20조 관련 부분 참조.

<sup>126)</sup> Lent, a.a.O., ZUM 2015, 134.

<sup>127)</sup> Lent, a.a.O., ZUM 2015, 135.

## 4. 책임자의 지명

### (1) 책임자의 개념

미디어국가협약(MStV) 및 이의 전신에 해당하는 방송국가협약(RStV)의 입법이유서는 책임자의 개념을 정의한 바가 없다. 다만, 이 규정은 정기적인 출판언론의 간기의무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 출판법의 책임편집자 범리에 의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의 의미상 책임자는 제공자가 제공물 가운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내용의 배제에 관한 결정권한을 사실상 위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이때 제공자와 책임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책임자는 형사처벌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신문기사나 저널리즘성격의 블로그의 공표를 저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그러한 공표가 설사 제공자의 의사에 반할지라도 추후의 기사삭제가 아닌 처음부터 공표를 차단할 권한을 전제로 한다.<sup>128)</sup>

다만, 형식적인 지명만으로는 아직 제18조 제2항의 책임자의 지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소위 정기적 출판언론의 명목상 편집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지 자신의 이름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 쉽게 전자적 언론 제공물의 내용에 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자 지명은 단지 처분권한이 존재한다는 반박 가능한 간접증거에 불과할 것이다.<sup>129)</sup>

### (2) 책임자 지명의 구성요소; 이름 및 주소정보

책임자 지명은 텔레미디어 내에서 이용자를 위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도로 책임자의

<sup>128)</sup> Lent, a.a.O., ZUM 2015, 136.

<sup>129)</sup> Lent, a.a.O., ZUM 2015, 136.

이름과 주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간기정보의 명료성원칙에 따라 지명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 “제18조 제2항에 따른 책임자”라는 표현으로 인해 지명표현방식을 반드시 미디어국가협약(MStV)의 참조 하에 “미디어국가협약 제18조 제2항에 따른 책임자”라고 표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sup>130)</sup>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에 대한 언급과 책임자가 누구라는 표현 없이도 제공물의 전체내용에 대해서 혹은 제공물의 특정부분에 대해서 저널리즘상의 책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분명하게 밝히는 객관적 형식(예컨대, ~에 대해 책임이 있다)만으로도 명료성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저널리즘 역할에 대한 추가정보, 즉 “책임편집자”, “책임편집국”이라는 표현 역시 가능하다. 그리고 정기적 출판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자, “V.i.S.d.P.”<sup>131)</sup>라는 표시 역시 투명성원칙에 부합한다.<sup>132)</sup>

이름정보는 성 이외에 이름 역시 축약되지 않고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종 성만으로는 혼란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가 예명으로 알려져 있다면, 이러한 가명 역시 허용된다. 한편, 주소와 관련해서는 우편번호, 지역, 번지수가 포함된 유효한 주소정보가 필수적이다. 회사의 정보, 즉 텔레미디어 제공자의 주소 역시 충분하다. 이에 반해 사서함정보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는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책임자가 동시에 제공자라면, “제공자 겸 책임자”라는 결합정보를 통해 이름과 주소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sup>133)</sup>

### (3) 인적 범위

미디어국가협약(MStV)이나 구 방송국가협약(RStV)의 입법이유서에서

<sup>130)</sup> Lent, BeckOK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Gersdorf/Paal 41. Edition, MStV § 18, Rn 10.1.

<sup>131)</sup> 출판법에 따른 책임자의 약자.

<sup>132)</sup> Lent, a.a.O., ZUM 2015, 136.

<sup>133)</sup> Lent, a.a.O., ZUM 2015, 137.

는 누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책임자로서 지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확정 역시 포함하지 않고 있다. 블로그나 마이크로 블로그와 같은 시민저널리즘에서는 제공자(블로거)와 책임자가 동일인일수도 있을 것이고, 제공자 외에 제공자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책임자로 지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디지털 출판언론 제공물의 경우 통상적인 책임자는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의 편집자일 것이다.<sup>134)</sup>

그밖에 간기 내에는 책임자 외에 추가적인 인물이 지명될 수도 있는데, 가령 디지털신문의 편집장 혹은 담당 편집자나 온라인 포털의 일부 섹션에 속한 포털사의 직원이 거명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인물의 지명은 이 사람 역시 제18조 제2항에 따른 책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표시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실제의 책임구조에 근거해서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간기에 편집국, 팀, 연락담당자 등 여러 직원들이 지명된 경우라도 이 사람들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다.<sup>135)</sup>

#### (4) 법적 효과

책임자의 지명에 따른 간기의무는 결과적으로 누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제공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확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책임자로 지명된 사람만이 모든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미디어국가협약(MStV)상의 이러한 책임과 제재시스템은 주 출판법(예컨대,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제21조 이하)과는 달리 책임자에 대한 법적 의무나 제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기적 출판언론과는 다른 상이한 구조를 가진다.<sup>136)</sup>

<sup>134)</sup> Lent, a.a.O., ZUM 2015, 137.

<sup>135)</sup> Lent, a.a.O., ZUM 2015, 137.

<sup>136)</sup> Lent, a.a.O., ZUM 2015, 138.

따라서 미디어국가협약(MStV)상의 책임자 규정은 엄격한 책임추궁기능이 아니라 완화된 호소기능의 의미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18조 제2항에서 요구된 개인 책임자의 지명은 전자적 언론 제공물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러한 책임자 지명은 저널리즘적 기준들의 준수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을 통해 보호되는 미디어의 여론형성절차에서 저널리즘 활동의 투명성에 관한 이용자의 이익이 확보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sup>137)</sup>

## 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 맞는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확대를 위한 제언의 일환으로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 상의 반론보도 청구권 및 제18조 상의 간기의무 규정들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독일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들은 이미 오래 전에 텔레미디어의 내용상 규제를 위해서 신문, 방송 혹은 인터넷 미디어 등 기존의 수직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라는 독창적 개념을 창안함으로써 저널리즘 성격을 지닌 다양한 융합매체에 대해서도 저널리즘 원칙과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전되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의 반론보도 청구대상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라는 개념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표지의 판단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기준으로서 보편성(내용상 다양성), 시사성(새로운 정보의 기사), 정기성(정기적 혹은 계속적 업데이트), 공개성(일반적 접근

<sup>137)</sup> Lent, a.a.O., ZUM 2015, 140.

가능성) 요소가 상황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sup>138)</sup> 아울러 이러한 형식적 기준들 외에도 제공물의 저널리즘 지향성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적용대상 멀티미디어 역시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의 보장이라는 맥락 하에서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미디어 보도를 통해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공자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며<sup>139)</sup> 이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달리 판단될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와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상황은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현행 미디어법체계 나아가 이를 둘러싼 개선논의들이 여전히 매체중심의 규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융합현상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언론중재법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인터넷신문”을 피해구제대상으로 편입시킨 이후 2009년 인터넷포털과 언론사닷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IPTV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동 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게 되었다.<sup>140)</sup>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은 ‘언론’이라는 개념 하에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한정된 뒤,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비록 언론은 아니지만 포털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언론중재법 대상으로 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sup>141)</sup>

그 후 별다른 개정 움직임이 없다가 언론중재위원회가 2015년 10월 13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소위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이라는 새로운 모습의 미디어 형태에 대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42)</sup>

138) Lent, a.a.O., ZUM 2013, 914(915).

139) Lent, a.a.O., MStV § 17 Rn 14.

140) 이승선, 위의 논문, 36면.

141) 박아란, 위의 논문, 59면.

하지만 이러한 입법과정과 논의의 전체적 흐름은 무엇보다 매체중심의 규정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특히 “간행물”이라는 출판형식의 매체중심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점에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미디어법제로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디어와 관련된 법은 이제 매체형태에 초점을 맞춘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굳이 새로운 미디어가 방송이나 신문이나를 따지기 보다는 그 미디어가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는 주장은 눈여겨 볼 사항이다.<sup>143)</sup> 이에 따르면 언론 개념은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맞춘 확장된 개념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뉴미디어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탈 매체중심적 시각의 전환을 통해 뉴미디어를 신문이나 방송의 범주에 넣기 보다는 뉴미디어가 생산하거나 유통한 콘텐츠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본다. 이러한 견해는 현실진단에 있어 핵심을 간파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 관점 하에서 과연 현행 언론중재법이 헌법상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장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시해야 할 오늘날의 온라인 언론 제공물의 특징은 그 구성방식이나 제공형태에 있어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체에서 벗어나 텍스트, 영상, 동영상 혹은 이들의 혼합 형태를 지닌 미디어 융합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체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은 더 이상 기존의 매체형태를 고수하기 보다는 제공 콘텐츠가 저널리즘 활동을 통해 헌법상의 여론형성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전

142) 2015년 10월 13일자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 자료집에 따르면, 제7조 제1항 신설규정 부분에서 “중재위원회는 이 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기타 방식에 의해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해 피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143) 박아란, 위의 논문, 73면.

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만 피해구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빈틈없는 언론중재제도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헌법상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 보장이라는 기본가치가 투영된 합헌적 입법체계의 마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도 이제는 매체규정 방식을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유사미디어 간행물 등 열거방식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탈피해 포괄적·개방적 멀티미디어 개념정립으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상세히 살펴본 독일 텔레미디어 개념의 참조 하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저널리즘적 멀티미디어 제공물에 상당하는 독자개념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이 도입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 개념 역시 하나의 법 정책적 구상에 따른 복합적 개념의 창조물로서 대체로 편집작업을 거쳐 제작된 저널리즘적 성격의 콘텐츠가 담긴 멀티미디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제공형태가 텍스트 인자, 시청각 요소인지, 동영상 형태인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예상 밖의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포섭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포괄적·개방적 개념이라면 앞서 서론에서 제시되었던 가세연을 포함해 국내의 각종 시사 유튜브 채널들에 대한 포섭문제 역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명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가 되었다는 학계의 지적<sup>144)</sup>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이 소개에 주력하였던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의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요건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까

144)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50693.html>, 한겨레 2022년 7월 22일자 “한선의 미디어전망대, 시사 유튜브 채널도 ‘언론’…합당한 법적 책임 감당해야” 제하의 기사

지 다뤘던 멀티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포섭문제와는 별도로 현재의 언론중재법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내의 반론보도 실무기준들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무기평등의 원칙 차원에서 제20조 제1항 제3문이 규정하고 있는 직접 연결 요청조항이나 동일한 형태의 제공 요건들은 현재 언론중재법의 대상인 인터넷신문이나 언론사가 제공하는 동영상 형태의 제공물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사건에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서 동영상이나 비디오 스트리밍 형식의 반론보도를 요구할 경우 이는 사실 대 사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거부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멀티미디어의 매체 특성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시점에 제공자의 온라인 제공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보도의 제공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최초보도와 유사한 위치나 동일한 섹션에서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어야 한다는 제20조 제1항 제4문의 규정 역시 반론보도 이행의 실무에 있어서 유용한 기준으로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의 실효적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 매체의 간기의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멀티미디어 제공자 측의 성명이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실무적으로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서 자체의 송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신속한 피해구제 역시 불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제공물의 특별한 간기의무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에 해당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김주연 (2020).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언론중재제도 관련 입법과제 검토, <언론중재>, 제155호, 34-51.
- 권은정 (2019). 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법체계적 고찰-‘통합방송법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규제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7집 제4호, 299-333.
- 김여라 (2018).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법」 편입 관련 법제 동향 및 주요 쟁점, <KISO JOURNAL>, 제33권, 16-21.
- 김태오 (2020). 독일의 미디어협약 제정안상 주요 내용-구 방송협약을 대체·보완하는 새로운 규제를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2020. 2호, 75-87.
- 류정호 (2015). 디지털 뉴스미디어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 <미디어와 인격권> 창간호, 35-62.
- 박신욱 (201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플랫폼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인한 법적 쟁점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 연구, <법학논총>, 제36집 제3호, 249-284.
- 박아란 (2015). 뉴미디어 시대 언론 개념의 특성 및 한계,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49-70.
- 박용상 (1991).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언론중재>, 통권 제38호, 21-40.
- 손형섭 (2021).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179-205.
- 오기두 (2016). 인터넷개인방송에 의한 표현의 보호와 규제,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 제1호, 35-62.
- 이승선 (202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1-65.
- 이유진 (2020). 새 ‘미디어법’에서 빠져나갈 플랫폼은 없다, <신문과 방송>, 제590호, 150-154.
- 이현정 (2022). 표현의 자유와 유튜브의 법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1호, 93-136.
- 장성준 (2015). 독일의 미디어주간협약(MStV) 도입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

〈KCA Media Issue & Trend〉, 2015. 5, 62-77.

조소영 (2006). 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153-181.

Eva Lohse, Weber kompakt, Rechtswörterbuch 9. Edition 2023.

Fechner, Medienrecht 21. Aufl, 2021.

Fiedler, BeckOK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Gersdorf/Paal 41. Edition.  
Lent, “Aktuelle Rechtsfragen der Gegendarstellung in elektronischen  
Presseangeboten”, ZUM 2016, 954-960.

\_\_\_\_\_, “Besondere Impressumspflichten im Online-Journalismus”, ZUM  
2015, 134-140.

\_\_\_\_\_, “Elektronische Presse zwischen E-Zines, Blogs und Wikis” ZUM  
2013, 914-920.

\_\_\_\_\_, BeckOK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Gersdorf/Paal 41. Edition,  
2023.

Sajuntz/Wiggenhor, Hasselblatt, MAH Gewerblicher Rechtsschutz 6. Aufl,  
2022.

Soehring/hoene, Presserecht 6. Aufl, 2019.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 Berichterstattung, 6. Aufl, 2018.

## ■ ABSTRACT

---

# The reply-reporting system under the German Media State Agreement (MStV)

Lee Soo Jong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Executive Adviser/Ph.D.

Whether reply-reporting is possible for new multimedia content such as YouTube channels provided through video sharing platforms can be considered an important topic under media law. This is because, while a wide variety of multimedia has already emerged in Korea due to the convergence of media, appropriate regulation or damage relief for this is still distant due to the lack of relevant laws.

Contrarily, in the case of Germany, multimedia legislation has long been reorganized with a focus on similar functions as part of the introduction of a horizontal regulatory model. In addition, the German Media State Agreement (MStV), which came into force in September 2020, imposes various journalistic obligations on journalistic and editorial telemedia (*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 Telemedien*), including the right to reply,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convergence of digital media.

In comparison, we must point out that the current media legal system, including the Press Arbitration Law, and the related improvement discussions are not sufficient to deal with the phenomenon of media convergence in the new multimedia era, as they still adhere to a media-centric regulatory method.

Therefore, in discussing the expansion of the domestic reply-reporting request system for multimedia, it is now the time when a paradigm shift is urgently needed to break away from the media-centric regulation method and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open multimedia concept. This is because today's online media offerings are characterized by a departure from traditional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in their composition and delivery format, showing a media convergence in the form of text, video, or a mixture of these. Therefore, an important point in reorganizing the regulatory system is that rather than adhering to the existing media form, it should focus on whether the provided content actively participates in forming public opinion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 journalistic activities.

Specifically, creating an independent concept equivalent to journalistic multimedia offerings in accordance with our reality, with reference to the German telemedia concept will be the only answer to cope with the changed media environment.

Keywords: Multimedia, journalistic-edited telemedia, German media national convention, right to request-reply reporting, colophon obligation

[ 논문투고일 2024. 6. 21.    논문수정일 2024. 7. 24.    게재확정일 2024. 7. 29. ]